

제 60 차 이 사 회

- ◆ 일 시 : 2018년 12월 27일 (목) 16시 00분
- ◆ 장 소 : 삼라정

Seoul
Philharmonic
Orchestra

재단
법인 **서울시립교향악단**

제60차 이사회 의사록

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

일시	2018.12.27 (목) 16:00	장소	삼라정
재적이사	12명(함00, 강00, 서00, 마00, 강00, 고00, 광00, 문00, 박00, 박00, 정00, 허00 이사)		
출석이사 및 감사	이사: 7명(함00, 강00, 강00, 고00, 문00, 박00, 박00 이사) 감사: 공석		
기록자	기획협력팀 노00		

2018년 12월 27일

(개의)

[제59차 이사회 보고안건]

- 사회 홍00 경영본부장
- 1. 보고안건 '제59차 이사회 결과보고'
- 2. 보고안건 '부지휘자 선임관련 활동계획 보고'
- 3. 보고안건 '음악감독 선임관련 중간보고'
- 4. 보고안건 '2018 유럽순회공연 결과보고'
- 5. 보고안건 '애국가 녹음 및 기증 결과보고'
- 6. 의결안건 '2018년 이월예산 승인(안)'
- 7. 의결안건 '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'
- 8. 의결안건 '운영규정 중 개정(안)'
- 9. 의결안건 '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중 개정(안)'
- 10. 의결안건 '상벌규정 중 개정(안)'
- 11. 의결안건 '임원인사규정 제정(안)'

[제183호 2018년 이월예산 승인(안) 토의]

- 홍00 본부장

출납폐쇄기한이 연말까지인 관계로 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한 연말공연 및 컨설팅용역 등의 예산을 이월승인 요청하고자 함

○ 이사장 함OO

이월예산 승인(안)에 대한 의견을 요청 드리며, 이의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183호 2018년 이월예산 승인(안)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음(의사봉 3타_

[제184호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토의]

○ 이사 문OO

정기공연 횟수가 9회나 감소했는데, 아르스노바가 없어진 부분이 반영된 것인가?

○ 대표이사 강OO

아르스노바가 없어져서 정기공연 횟수가 감소한 것이 아님. 공연사업 수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횟수 도출을 통해 공연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. 더블공연 운영 시 유료 관객점유율 제고에 한계가 있어 불필요한 더블공연을 줄이고 공연질 제고에 집중하고자 함

○ 이사 박OO

정기공연은 티켓판매를 통해 재단수익에 기여하므로, 집중적인 마케팅과 함께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
○ 대표이사 강OO

자체마케팅과 홍보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함. 다만 콘서트홀 건립을 위해 증가한 공연횟수를 재단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

○ 이사 문OO

콘서트홀 관련 사항에 대한 보완설명을 요청함

○ 송OO 기획협력팀장

해외 오케스트라처럼 공연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 되어야 하는데, 실제적으로 100회 이상 대관이 어렵기 때문에 콘서트홀을 건립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실제적으로 비용 대비 수익을 고려했을 때 적정수준의 공연 횟수를 유지하고, 향후 음악감독 선임 후 공연 횟수에 대한 재논의를 진행할 예정임

○ 대표이사 강OO

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반영된 사항 등 추가설명을 요청함

○ 김00 경영지원팀장

2015년 당시 예술감독이 선임되었다는 전제하에, 공연횟수를 일시적으로 100회로 확대할 수 없으니, 점진적으로 공연횟수를 증가시키고자 하였음. 덧붙여, 음악감독 선임을 위해 일정이 가능한 지휘자를 섭외하여 10~15회 공연을 진행·평가함에 따라 공연횟수가 증가하였음. 그러나 지금은 공연을 통한 음악감독 후보자 평가가 종료된 상황이라 해당 이슈는 해소되었음. 재단은 음악감독 부재 시 공연횟수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음악감독 선임 후 체계적으로 해당 사항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음

○ 이사 박00

공연예산 감소에 따라 공연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원들의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공연 질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이 필요함

○ 대표이사 강00

주신 말씀을 반영하여 집중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하고, 공연의 내실을 기하며, 차기년도 사업계획시 해당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음

○ 이사 강00

정기공연 외 공연비중이 70%를 초과함. 세계적인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시민에게 다가가는 오케스트라 두가지 모두를 추구할 경우 정체성이 불분명해질 수 있음. 또한 시민공연이 유료관람객 감소, 단원들의 피로도 증가로 이어져 티켓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

○ 이사 문00

공익공연은 서울시 요청을 반영한 것인가?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인가?

○ 홍00 본부장

공연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,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균형있게 공연을 진행해야 함. 또한 찾아가는 공연의 시민반응이 호의적이었으며, 이는 미래관객 발굴/확보 및 시장확대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

○ 대표이사 강00

소통 및 홍보 목적도 있음

○ 이사 박00

더블공연이 낮은 정기공연 유료관객 점유율·시민공연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 필요해보임. 소통 및 홍보 외 단원들 실력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며, 참여하고자 하는 연주자도 많이 있음

○ 이사 박00

더블공연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. 그러나 정기공연에 전략적인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함. 동일한 공연을 다른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것은 고객군을 분리하는 측면도 있어보임

○ 이사 박00

더블공연을 어느정도 줄인 것인가?

○ 양00 홍보마케팅팀장

내년 40회 공연 중 5회는 실내악, 35번 중 25번은 더블공연으로 진행함. 올해는 24~25주에 공연을 하여 연속 5-7주로 진행한 적도 있음. 그러나 내년은 22주에 공연을 하여 격주로 공연/휴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함

○ 이사장 함00

시민공연의 효과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. 기업공연은 어디에서 진행했는가?

○ 양00 홍보마케팅팀장

몇 년동안 약정되어있는 코리안리와 진행하고 있음

○ 대표이사 강00

기업공연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함. 내년엔 활성화되도록 추진 할 예정임

○ 이사 문00

모바일 페이지와 기업후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보임

○ 대표이사 강00

동의함. 관련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진행예정임. 해외에서 관련 수요가 많이 제시되고 있음

○ 이사장 함00

분야에 관계없이 모바일 이용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. 공연계 역시 디지털 관련 기능을 보완하고, 기회를 넓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함

○ 대표이사 강00

최근 뉴미디어 담당인력을 충원했고, 내년엔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도할 예정임.

○ 이사 박00

기업후원 시 내년엔 적용이 안되고 내후년부터 적용이 되는것인가?

○ 대표이사 강00

금일안건은 현재 수립된 계획이며, 기업후원 시 조율을 통해 금년에도 진행가능함

○ 이사 박00

기업공연 등으로 공연횟수 증가 시 단원들 근로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보임

○ 대표이사 강00

해당부분은 협의하여 진행하겠음

○ 이사장 함00

주신 여러 의견을 실제 운영에 반영을 요청함. 내년도 사업계획(안)에 대한 특별한 질문 또는 이의사항 없으시면, 의안번호 제184호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은 원안 의결하겠음(의사봉 3타)

[제185호 운영규정 중 개정(안) 토의]

○ 사회 홍00 본부장

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 개정 및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시정방향을 운영규정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. 공개채용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재단 임직원의 가족·친척 대상 우대채용 금지 원칙을 신규항목으로 제정하고 함

○ 이사장 함00

재단에 임직원 가족, 친척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가?

○ 사회 홍00 본부장

단원 중 부자, 자매, 배우자등이 있으나, 오디션을 통해 공정하게 역량을 기준으로 채용되었음

○ 이사장 함00

다른 질문 사항 없으시면, 제185호 운영규정 중 개정안은 원안 가결하겠음(의사봉 3타)

[제186호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중 개정(안) 토의]

○ 사회 홍00 본부장

이 부분도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 개정 및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시정방향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임.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의/의결에 참여한 임원의 해당 시기 임원직의 공개모집 제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

○ 이사장 함00

제186호 의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, 제186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중 개정(안)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(의사봉 3타)

[제187호 상벌규정 중 개정(안) 토의]

○ 사회 홍00 본부장

이 부분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규정명확화 목적임. 징계시효가 5년으로 되어있는 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횡령 및 유용에 채용비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.

○ 이사장 함00

제187호 의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, 제187호 상벌규정 중 개정(안)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(의사봉 3타)

[제188호 임원인사규정 제정(안)]

○ 사회 홍00 본부장

이 부분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규정명확화 목적임. 현재 재단에 직원들에 대한 인사규정은 있으나 임원 채용비리 또는 인사 관련 규정은 없었으므로, 이를 규정으로 마련하고자 함. 임원인사규정 제정(안)은 재단 뿐 아니라 서울시 전 기관에 적용되는 사항임

○ 이사 강00

비상임이사도 임원이사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옳은가?

○ 이사 문00·박00

규정상 선임직 이사도 포함되는가?

○ 이사 강00

규정 3조에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다고 되어있으므로 당연직 이사 뿐 아니라 비상임이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. 그러나 당연직과 선임직의 적용범위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
○ 이사 박00

직무상 의무로 이사회 참석과 비밀누설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, 그 외는 명확해 보이지 않음

○ 이사장 함00

원 취지는 상근이사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

○ 이사 문00

제3장 직무상 의무 중 6조에서 9조까지는 비상임임원도 포함되고, 10조부터는 상근임원으로 한정되어 있음

○ 이사장 함00

이 건은 새로 제정하는 건인가? 새로 제정할 때는 지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, 지침을 준용한 것인지 아니면 재단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인가?

○ 송00 기획협력팀장

서울시에서 임원인사규정 표준(안)을 배포하여, 이를 준용하여 제정안을 마련하였음. 직무상 의무는 상근/비상근 임원 모두를 포함하며, 10조, 11조는 상근임원만 특정하고 있음

○ 대표이사 강00

오늘 의결해주신 대부분의 규정들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공통적으로 반영된 건 임

○ 이사 박00

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한가?

○ 송00 기획협력팀장

수정할 수 있음. 일반적으로는 표준(안)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음

○ 이사 박00

상근임원으로 특정된 조항 외 비상근이사와 상근이사 통칭항목에 대해서는 분명한 공적 해석이 필요해보임

○ 이사장 함00

일반기업의 경우 임원은 집행임원, 등기임원이 있고, 이사회는 의결을 비상근 사외이사가 있음. 현 재단의 비상근이사는 사외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, 비상근이사와 당연직 이사의 구별이 필요해보임. 영리법인인 공사의 이사 역시 사회이사와 유사한 구조로 판단됨. 그러나 시향은 구조가 상이하므로 신규제정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해보임

○ 이사 박00

현재 재단의 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수행하는 측면이 있으므로, 이사를 통칭하기 보다는 비상근임원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임

○ 이사장 함00

물론 서울시 지침이 있으나, 시 산하의 다른 영리기관과 시향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사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. 이에 의안번호 제188호 임원인사규정 제정(안)은 재검토해서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음.(의사봉 3타)